

「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9. 23. 개정 판 (시행 2019. 9. 1.) → 2021. 6. 7. 개정 판 (시행 2021. 6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03/compare?from=926&to=119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3:18:3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평정의 구분) 평정은 정기평정과 승진평정(5급 승진대상자)으로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단, 직종과 현재 업무가 다른 경우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. ① 정기평정(조정평정) : - 1차 평정(팀원50%/팀장60%), 2차 평정(팀원40%/팀장30%), 학교행사 참여(10%)<개정 2019-09-23>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/기술/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(60%) 사무처장(30%) 총무인사팀(10%) 팀원 본인 팀장(50%) 부서장(40%) 총무인사팀(10%) 기능직 본인 팀장(50%) 부서장(40%) 총무인사팀(10%) ② 승진평정<개정 2019-09-23>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	제2조(평정의 구분) 평정은 정기평정과 승진평정(5급 승진대상자)으로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단, 직종과 현재 업무가 다른 경우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. ① 정기평정(조정평정) : - 1차 평정(팀원50%/팀장60%), 2차 평정(팀원40%/팀장30%), 학교행사 참여(10%)<개정 2019-09-23>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/기술/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(60%) 사무처장(30%) 총무인사팀(10%) 팀원 본인 팀장 혹은 차장(50%) 부서장(40%) 총무인사팀(10%) 기능직 본인 팀장(50%) 부서장(40%) 총무인사팀(10%) ② 승진평정<개정 2019-09-23>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

현 행	개 정 안
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/기술/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기능직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※ 비고 :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<개정 2019-09-23>	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/기술/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기능직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※ 비고 :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<개정 2019-09-23>

현행	개정안
제14조(평정방법)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, 직능에 따라 일반~~직~~ 기술직과 능력직,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. 단,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. ① 정기평정 1.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% 30% 10% 2.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% 40% 10% 3. “학교행사참여”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, 월요일 아침채플, 기도주일, 교직원수련회, 의무교육, 은퇴식 등을 말한다. - 월요일 아침채플, 기도주일 : 50% - 교직원 수련회 : 20% - 의무교육 : 20% - 은퇴식 및 기타 : 10% 단,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. 4.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(성과평가제-Management By Object)를 중심으로 평정하며, 목표관리는 별지 1, 2, 3, 5,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. 5. 각 개인 목표관리(MBO)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. 6. <삭제 2019-09-23>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	제14조(평정방법)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, 직능에 따라 일반~~직~~ 기술직과 능력직,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. 단,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. ① 정기평정 1.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% 30% 10% 2.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% 40% 10% 3. “학교행사참여”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, 월요일 아침채플, 기도주일, 교직원수련회, 의무교육, 은퇴식 등을 말한다. - 월요일 아침채플, 기도주일 : 50% - 교직원 수련회 : 20% - 의무교육 : 20% - 은퇴식 및 기타 : 10% 단,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. 4.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(성과평가제-Management By Object)를 중심으로 평정하며, 목표관리는 별지 1, 2, 3, 5,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. 5. 각 개인 목표관리(MBO)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. 6. <삭제 2019-09-23>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

현행	개정안
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/기술/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기능직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※ 비고 :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<개정 2019-09-23> ② 승진평정<개정 2019-09-23> 1. 승진 평정 중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개정 2019-09-23> 구분 평정자	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/기술/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기능직 90 10 ×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/F ※ 비고 :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<개정 2019-09-23> ② 승진평정<개정 2019-09-23> 1.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개정 2019-09-23> 구분 평정자

현 행	개 정 안
비고 (50%) (20%) (30%)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. <u>상향/동료평가</u>는 <u>팀원전체</u>, 하향평가는 팀장 <u>혹은</u> 부서장으로 함 2. 인터뷰평가는 <u>최고,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</u> 3. <삭제>. 인터뷰는 전문성평가, 포트폴리오 발표 2.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청탁금지법교육)과 재임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 단,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임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.(승진평정에 P/F 반영-매년 충족해야 함).<개정 2019-09-23> 3. 가.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. 4.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개정 2019-09-23> 구분 평가위원 비고 8→7급 승진(4년) 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<개정 2019-09-23> 7→6급 승진(4년) 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<개정 2019-09-23> 6→5급 승진(4년) 4-5급 2명, 부총장, 사무처장, <u>사무부처장</u>, 인사팀장, 재무실장(인사소위원회) 7명 5→4급 승진(4년) 인사위원회 13명 4→3, 2급 승진 총장 5. 직원인사규정 제24조(특별승진 및 승급)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(직급)할 수 있다.<개정 2019-09-23> ㉓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. *평가척도 : S(탁월) A(우수) B(양호) C(미흡) D(매우미흡) 1. 95점 이상: 탁월 (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) 2. 90점 이상: 우수 3. 80점 이상: 양호	비고 <u>인터뷰(60%)</u> <u>하향평가(20%)</u> <u>상향/동료평가(20%)</u>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. <u>인터뷰평가는 최고,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</u> 2. 하향평가는 팀장, 부서장으로 함 3. <u>상향/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,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/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</u> 인터뷰는 전문성평가, 포트폴리오 발표 2.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청탁금지법교육)과 재임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 단,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임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.(승진평정에 P/F 반영-매년 충족해야 함).<개정 2019-09-23> 3. 가.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. 4.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개정 2019-09-23> 구분 평가위원 비고 8→7급 승진(4년) 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<개정 2019-09-23> <u>기능직 승진은 5년</u> 7→6급 승진(4년) 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<개정 2019-09-23> 6→5급 승진(4년) <u>인사소위원회(부총장, 사무처장, 재무실장, 총무인사팀장, 3명, 5명)</u><개정 2021-06-07> 7명 5→4급 승진(4년) 인사위원회 13명 4→3, 2급 승진 총장 5. 직원인사규정 제24조(특별승진 및 승급)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(직급)할 수 있다.<개정 2019-09-23> ㉓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. *평가척도 : S(탁월) A(우수) B(양호) C(미흡) D(매우미흡) 1. 95점 이상: 탁월 (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) 2. 90점 이상: 우수

현행	개정안
4. 70점 이상: 미흡 5. 70점 미만: 매우 미흡 (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)	3. 80점 이상: 양호 4. 70점 이상: 미흡 5. 70점 미만: 매우 미흡 (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.)
제19조(가점 감점평정의 평정자) 가점 감점평정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며 인사팀과 해당 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.	제19조(가점 감점평정의 평정자) 가점 감점평정은 사무처장이 주관하며 <u>총무인사팀</u> 과 해당 위원회 등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21-06-07>
제20조(가점 평정점) ① 가점 평정은 경력, 학력, 포상, 제안, TFT참여, 정책평가, 대외평가,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.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.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.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-09-23>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.2점 0.4점 0.6점 0.8점 1점 1.2점 1.4점 1.6점 1.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-09-23> 학사 석사 박사	제20조(가점 평정점) ① 가점 평정은 경력, 학력, 포상, 제안, TFT참여, 정책평가, 대외평가, 부서평가 평정으로 구분한다. ② 가점 평정의 평정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아니한다.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0.2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-09-23> 1년 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 초과 6년 초과 7년 초과 8년 초과 9년 초과 10 년초과 0.2점 0.4점 0.6점 0.8점 1점 1.2점 1.4점 1.6점 1.8점 2점 ④ 학력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-09-23> 학사 석사 박사

현행	개정안
0.5점 1점 2점 ㉔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 ≡ 이사 ≡ 상 1.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㉕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.8 0.6 0.4 0.2 평정자 인사소위원회 ㉖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1.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: A=1, B=0.8, C=0.5, D=0.3 2.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.5 1 0.5 0	0.5점 1점 2점 ㉔ 포상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구분 평정점 비고 장관 포상 2점 총장 ≡ 이사 ≡ 상 1.5점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1점 국회의원 포상 포함 ㉕ 제안평정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1 0.8 0.6 0.4 0.2 평정자 인사소위원회 ㉖ TFT참여자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하며, <u>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.</u> 〈개정 2019-09-23〉 1. 각 TFT마다 등급을 두고 등급 당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: A=1, B=0.8, C=0.5, D=0.3 2. 각 TFT의 등급은 인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구분 S A B C D 반영점수 2 1.5 1

현 행	개 정 안
평 정 자 TFT 위원장 ㉔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.〈개정 2019-09-23〉 1. 평가대상 : -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-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-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. 평정자 : 총장/부총장 3. 가산점 : 최대 +2점 4. 평가방법 : 중요도, 파급효과, 이행도,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㉕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1. 개요 :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(기획처 담당자 제외) 2. 평가대상 :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. 평정자 :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. 가산점 : 최대 +1점 ㉖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(4년)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,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9-09-23〉	0.5 0 평 정 자 TFT 위원장 ㉔ 정책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2점을 넘지 아니한다..〈개정 2019-09-23〉 1. 평가대상 : -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지시사항 - 매년 말 부서에서 선정 제출한 최우수 과제 1건 -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실적 2. 평정자 : 총장/부총장 3. 가산점 : 최대 +2점 4. 평가방법 : 중요도, 파급효과, 이행도,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㉕ 대외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, 최대 1점을 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9-09-23〉 1. 개요 : 정보공시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(기획처 담당자 제외) 2. 평가대상 : 각 부서별 정보공시 담당자 3. 평정자 : 정보공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가점 부여 4. 가산점 : 최대 +1점 ㉖ 부서평가의 평정점은 해당직급(4년)에 부서업무 및 개인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, 업무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3점을 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9-09-23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기평정(조정평정) :

- 1차 평정(팀원50%/팀장60%), 2차 평정(팀원40%/팀장30%), 학교행사 참여(10%)

구분

고과자

학교행사

참여

자기평정

1차 평정자

2차 평정자

일반/기술/재무직

팀장

본인

부서장(60%)

사무처장(30%)

총무인사팀(10%)

팀원
본인
팀장 혹은 차장(50%)
부서장(40%)
총무인사팀(10%)
기능직
본인
팀장(50%)
부서장(40%)
총무인사팀(10%)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㉔ 승진평정

1.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

구분

평정자

비고

인터뷰(60%)

하향평가(20%)

상향/동료평가(20%)

일반직

기술직

재무직

1. 인터뷰평가는 최고,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

2. 하향평가는 팀장, 부서장으로 함

3. 상향/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,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/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

인터뷰는 전문성평가, 포트폴리오 발표

2.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청탁금지법교육)과 재임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 단,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임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.(승진평정에 P/F 반영-매년 충족해야 함).

3. 가.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.

4.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

구분

평가위원

비고

8→7급 승진(4년)

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

기능직 승진은 5년

7→6급 승진(4년)

정기평가(TO범위 내, 전체 하위 10%에 포함되지 않은 자)

6→5급 승진(4년)

인사소위원회(부총장, 사무처장, 재무실장, 총무인사팀장, 3급 5급 3명)

7명

5→4급 승진(4년)

인사위원회

13명

4→3, 2급 승진

총장

5. 직원인사규정 제24조(특별승진 및 승급)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(직급)할 수 있다.

제19조 중 "인사팀과"를 "총무인사팀과"로 한다.

제20조제7항 중 "아니한다.<개정">을 "아니하며, TFT위원장의 참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.<개정">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